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 12. 1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7일

나. 제출자 : 권영식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
제7차 사회건설위원회(2015.12.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금융기관의 대여 이자율이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구 자활 기금 대여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자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변경 (안 제8조제3항)
- 자활기금,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대여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변경(안 제9조의2제4항)
- 현재 대여중인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 점포 임대자에게도 개정 규정 적용(부

칙 안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조례안은 시중 은행권의 대여 이자율이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자활기금의 대여 이자 및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- 주요 개정 내용은 자활기업의 사업자금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변경으로
 - 현재 이자율을 연 3퍼센트 이내 및 3퍼센트에서 연 1퍼센트 이내로 조정하고
 - 연체이자는 연 15퍼센트에서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를 적용토록 하였으며
 - 기존의 자활기금 대여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적용 특례를 규정하여 적용함.

- 자활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조성·운용하는 기금임에도 연 3%의 이자율과 연 15%의 연체 이자율로 영세한 자활기업 등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.
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, 현재 은행권 저금리 시대에 맞게 자활지원사업 및 임대 대여 이율의 인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자활·자립을 촉진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11월 일

발의자 : 유승용 의원 외 10명

1. 제안이유

금융기관의 대여 이자율이 하향됨에 따라 우리구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자활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변경
(안 제8조제3항)

나. 자활기금,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대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변경(안 제9조의2제4항)

다. 현재 대여중인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 점포 임대자에게도 개정 규정 적용(부칙 안 제2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설치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5. 11. 6 ~ 11. 12) :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동법시행령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.

제6조제1호 중 “영 제3조2”를 “영 제3조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연 3퍼센트”를 “연 1퍼센트 이내”로 하고

“연 15퍼센트”를 “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4항 중 “연 3퍼센트”를 “연 1퍼센트”로 하고

“연 15퍼센트”를 “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,

제2조 (적용 특례) 제8조제3항 및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 임대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<u>동법시행령</u>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6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·기관·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<u>영 제3조2</u>에 따른 차상위계층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5. (생략) <p>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생략) ② (생략) 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6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----- <p><u>영 제3조</u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 <p>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p>③사업자금의 대여 이자는 <u>연 3퍼센트</u>로 하되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<u>연 15퍼센트</u>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</p> <p>④(생략)</p> <p>제9조의2(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 이자는 <u>연 3퍼센트</u> 이내로 하되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<u>연 15퍼센트</u>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③----- <u>연 1퍼센트 이내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수탁금융기관</u> -----</p> <p><u>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</u></p> <p><u>퍼센트</u>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2(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 <u>연 1퍼센트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수탁금융기</u></p> <p><u>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</u></p> <p><u>50퍼센트</u>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	<p>(부칙)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(적용 특례) 제8조제3항 및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 임대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</p>